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·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4조)

나. 특별교통수단의 운영, 이용대상, 이용요금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
1) 운행 시간 및 지역 : 08:00부터 19:00까지, 경북 및 대구지역 한정

2) 이용대상 : 장애등급 1·2급, 장기요양등급 1·2등급, 임산부 등

3) 이용요금 :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

다.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(안 제8조)

라. 운영관리, 수탁자의 의무, 위탁해지(안 제9조부터 11조까지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 등(별첨참조)

나. 예산조치 : 120,000천원(차량구입비 80,000천원, 운영비 40,000천원)

다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 : 2015. 7. 2 ~ 7. 22(20일간)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 16조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·운영과 재정지원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

○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
- 안 제1조에서는 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관리·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
- 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통해 관계 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
- 안 제4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, 특별교통수단의 운영, 이동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「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」에서 대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
- 안 제5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리규정으로 운행 시간은 08:00부터 19:00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운행을 위해 시간조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지역은 경북 및 대구광역시로 한정하고 전화 또는 서면을 이용할 수 있고 즉시이용과 사전예약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도착지가 관외일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고 출발지가 관외 일 경우에는 도착지는 성주군 관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안 제6조에서는 이용대상으로 장애등급 1.2등급, 65세이상 노인 장기요양 1.2등급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, 임산부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,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
- 안 제7조에서는 이용요금을 일반택시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정하고 있으며
- 안 제8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관리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
-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, 수탁자의 의무, 위탁의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경북도내 포항시, 김천시, 예천군, 울진군 등 8개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65세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차량 운영비 부담이 예상됨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효율적 예산운영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